

중요 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 선언

 돋보기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05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돋보기를 내며 11

전문 돋보기 18

조항 돋보기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32
2. 자유와 평등 34
3. 연대와 협력 37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39
5. 구조의 의무 43
6. 진실에 대한 권리 47
7. 책임과 재발방지 51
8. 피해자의 권리 55
9. 치유와 회복 59
10. 공감과 행동 63
11. 기억과 기록 66
12. 저항할 권리 69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72

후문 돋보기 75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돋보기를 나오며 82



❧  
잊지않을게!  
꼭까지 밝히줄게!

진상규명

진상규명

진상규명

진상규명

진상규명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멈출 수 없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통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졸이고 아파했다.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를 했고, 광장에 나섰고,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박해 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며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 권리를 위한 실천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겠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 싸움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이 다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 2.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받아서 안 된다.
- 3. (연대와 협력)**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5.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6.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7.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의 해결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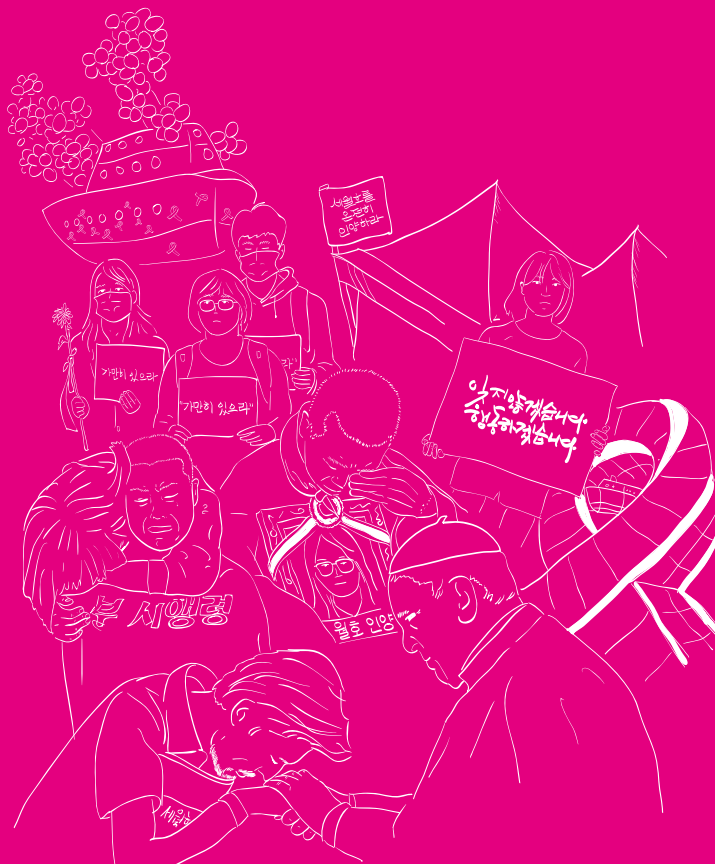


- 9.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 10.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11.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 12.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
-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상실과 애痛,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돋보기』를 내며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돌보기〉를 내며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세월호 참사는 ‘단절’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 이라지만 목숨 귀한 줄 모르지는 않는 사회일 것이라고, 아무리 사람 목숨 차별하는 세상이지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회일 것이라고, 아무리 제각각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참혹한 고통 앞에서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회일 것이라고 ……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을 참사라고 부릅니다.

사고는 처리하고 사건은 해결하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단절의 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를 열 때까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재입니다. 멈춰버린 시간은 그때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참사의 경험이 그저 단편적인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요청하는 절박한 신호라면, 인간의 권리로부터 다시 세우자고요.



모두가 지니고 있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100여 회의 풀뿌리토론이 열렸습니다. 1,100여 명이 참여하여 세월호에 대해 말하고 인간의 권리를 제안했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기억으로부터 침해당한 권리를 확인하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다시 확인하며 공감과 연대의 기억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모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사회를 향한 호된 비판이며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를 가리키는 든든한 꺾대입니다.

4.16인권선언은 시작일 뿐입니다. 꺾대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이 이어질 때 선언은 비로소 선언일 수 있습니다. 2014년 범국민 서명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끊임없는 방해로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산업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정책도 여전합니다. 참사의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희생자들을 사회적으로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장소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권자로서 모여서 말하고 움직이는 것은 더욱 극악한 폭력으로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를 멈추면 우리는 참사 이전의 사회에 갇히게 됩니다.

4.16인권선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익숙해져버렸거나 체념하게 됐던 일들을 다시 보자고 요청합니다. 가만히 있으리라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또 다른 참사의 절망일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슴 한편에 지녔던 미안함도 그것이겠지요. 미안함에 머무르지 마시다.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힘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참사 이전의 사회를 온존시키려는 세력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지려는 정치적 책임은 권리이기도 합니다.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기를 머뭇거리지 마시다. 우리의 권리를 현실에 새깁시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역사가



4.16인권선언 추진단 2차 전체회의에 참가한 시민들

인권입니다.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에 담긴 수많은 권리들은 누군가의 치열한 투쟁이 남긴 기록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으로 4.16 인권선언이 끊임없이 새로 쓰이기를 바라며 해설서를 냅니다. 여기에 담긴 해설은 4.16인권선언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의 행동으로 더욱 풍부하게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더욱 다양한 사람들의 연대로 모든 사람의 권리를 향해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꿔온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박한 상식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함께 선언하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인권입니다.

선언하라 우리를!

2016년 2월 1일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전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 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선언문의 첫 문장은 한국 사회가 현재 처해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과장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은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잠재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그리고 어떤 개인에게든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자연적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원인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최대한 구조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하는 국가가 희생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사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그것도 ‘범죄적인 사건’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뒤집힌 차 안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는 사람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경찰이 아무런 적극적인 구조 행위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겠지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이러한 의미의 범죄 집단이 될 때, 그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목숨이 어찌 살아있는 목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세월호 침몰은 그것의 사건성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말 하듯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인명을 구조하지 않은 ‘범죄적 사건’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지요.

사실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천천히 침몰해 왔습니다. 1953년 1월 여객선 창경호가 침몰하여 300여 명의 승객이 참변을 당했을 때, 1970년 12월 남영호가 침몰하여 326명이 숨졌을 때, 1993년 10월 서해페리호가 침몰하여 362명이 죽었을 때, 이 모든 침몰사고는 세월호 침몰과 마찬가지로 과적과 과승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의미 있는 안전 규제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서해페리호 침몰 사고 이후 잠시 김영삼 정부가 만들었던 여객선 안전규제 정비도 시간이 지나

자 예산을 줄이고(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보조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규칙을 개정하여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과적·과속을 단속해야 할 운항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해경이 아닌 연안해운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맡겼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에는 선박안전법을 개정하여 과적·과속 시 이를 어긴 직접적 당사자(선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선박회사의 최고경영자나 실소유주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연안해운사들이 마음 놓고 과적·과속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노후선박의 운행 가능 한도를 5년 더 연장해 30년으로 만들어 해운사들이 새로운 선박을 구입하는 대신 낡은 선박을 그대로 운행할 수 있게 했지요. 해운사의 이윤만이 정부의 관심사였지 승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세월호가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여기에 더해 사실상 어떤 적극적인 구조의 시도조차 없었던 점에서 찾아지지만, 세월호는 단번에 터져 나온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참혹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참사 등 이윤을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사건'은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진실 규명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의 요

구를 목살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출범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차 정부에 대한 조사를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는 등, 조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 시행령 때문에 그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정의를 회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짓밟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실만을 밝히고 전달할 의무가 있는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원 구조” 오보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구조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정부가 구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 쇼를 연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입니다. 이후 언론은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호도하는 데 앞장서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자녀 대학 입학 특례’나 ‘보상금 지급’을 확인조차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하나가 되어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진실을 덮으며 시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고 있는 운명을 모른 채 침몰하는 배 안에서 선원들의 다음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에게 배를 버리고



달아나면서 선원들이 했던 말과 같네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순에 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멈출 수 없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동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즐기고 아파했다.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를 했고, 광장에 나섰고,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며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은 ‘인간’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인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



© 권영진

로 권리들을 갖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반대로 권리들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자신의 목숨이 어느 날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하고도 그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의 목숨은 파리의 목숨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이 가져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권리를 갖지 못한 자는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권리’ 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더 나아가 배제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싸울 때에만 모두가 함께 비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한 이러한 싸움은 세월호 침몰 이후 슬픔 속에서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팽목항, 안산, 광화문은 이러한 슬픔의 싸움이 시작되고 지속되었던 몇몇 상징적 장소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곳에서만 이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SNS에서, 그리고 애통함이 뒤덮인 그 모든 거리에서 함께 아파하고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바뀌지 않는 구조인원 ‘0’이라는 숫자에 분노하여 마침내 삼삼오오 떼를 지어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지요. 범죄를 저지른 정부의 경찰은 정정당당한 우리의 요구를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한 차벽을 치고, 최루액을 뿌려대고, 급기야 물 대포로 사람을 쓰러뜨려 사경을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웠으며, 저항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싸움을 통해 증명하였듯이, 그리고 지금 우리 스스로가 또 한 번 증명하고 있듯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압과 배제에 맞선 투쟁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끊임 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움직임이 권력의 칼을 쥐고 흔드는 자의 거대한 힘 앞에서 금방이라도 사그라질 하나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촛불이 다른 촛불을 불러내고 또 다른 촛불로 이어져서 마침내 촛불의 바다를 이루고 만인의 촛불이 될 때, 우리는 만인의 이름으로 권력이 행하는 배제를 거꾸로 배제할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자유와 평등이 대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양자 사이엔 어떤 위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평등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거나 평등을 지



키기 위해선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고 믿는 식이지요. 냉전시기 자본주의 국가는 자유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웠고, 반면 사회주의 국가는 평등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서 나타난 결과는 어땠나요? 그것은 자유와 평등 모두의 동시적 파괴였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유롭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국가는 평등하지 않았지요.

민주주의라는 말의 고대 그리스어는 ‘이소노미아(isonomia)’ 였는데, 고대 로마의 정치철학자들은 이 말을 ‘평등한 자유(aequa libertas)’ 라는 말로 번역하곤 했습니다. 곧 평등과 자유는 본래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등과 자유는 둘처럼 보이



혁명의 신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들고 있다

지만 마치 뱀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이어지는 하나의 면입니다. 따라서 자유가 부정되면 평등마저 부정되고, 평등이 부정되면 자유마저 부정됩니다. 이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제1조에서 곧바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라고 말했지요. 이것이 인권의 근본입니다.

이어지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제2조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데 있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보다시피 안전은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은 누군가의 특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누군가는 자신의 돈이나 권력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누군가는 돈이나 권력이 없어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특권으로 변질됩니다. 둘째, 여기서 안전이라는 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의 “슈레테(sûreté)” 또는 “세이프티(safety)”를 의미하지, 이웃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달성되는 안보라는 의미에서의 “세큐리테(sécurité)” 또는 “시큐리티(security)”를 말하지 않습니다. 안전은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통해 정치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보나 보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전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보편적인 상위의 범주이며, 따라서 안전이 파괴되면 안보나 보안도 역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끊임 없이 적대시하며 불안해하는 자가 어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불의의 사고는 부자에게도 권력자에게도 닥쳐옵니다. 안전에 대한 공적 보장이 무너지면, 비록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는 것이 가난한 대중, 사회적 약자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

도 그 모든 안전을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언문이 말하듯이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안전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겠습니까.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 권리를 위한 실천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겠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 싸움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미 우리는 권리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저항과 연대를 통해서만 쟁취되고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과 연대란 그 자체로 정치적 활동, 바꿔 말해서 시민들의 활동입니다. 요컨대 인권은 시민들이 갖는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행사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자유는 곧 평등’이라는 명제와 함께 ‘인간은 곧 시민’이라는 명제를 동시에 천명하였으며,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권은 “권리들을 가질 권리(the right to have rights)”로서의 시민권을 전제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권리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으뜸 권리를 시민들 자신이 갖

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민 주권”입니다. 근대 이전에 주권은 신과 같은 초월자가 왕과 같은 국가 최고의 권력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라고 여겨졌었습니다. ‘인민’에 대한 ‘주인의 권리’였던 셈이지요. 그러나 미국 독립 전쟁, 프랑스 대혁명 등 여러 시민 혁명을 통해 주권은 이제 인민 자신에게 있다고 선포되었고 그것이 보편적이며 비가역적인 정치의 진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권은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 일군의 대표자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들의 평등과 자유를 부정하는 데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정당하게 인민에 의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소환 같은 제도를 떠올려볼 수 있겠지요.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말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인민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민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어떤 주어진 정치체 안에서 이미 일련의 권리들을 누리는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예컨대 ‘국민’) 자신의 억압과 배제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국적, 성별, 인종, 부의 크기 따위와 상관없이, 저항하는 자가 가장 탁월한 의미에서의 “능동적 시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에서 싸우고 있든지 간에 그는 바로 자신의 투쟁을 통해 그곳에 제도화되어 있는 정치체를 민주화하는 데에 가장 능동적인 방식으로 기여하는 사람이기 때

문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그 참사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슬픔 속에 애도하며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가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든다면, 이는 우리 시민의 주권적 저항이 우리 모두를 마침내 해방시킬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죽음의 공동체를 넘어 도래할 생명의 공동체,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투쟁일 것입니다. 

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손잡는 날! 결혼, 이사, 계약 등 하기 좋은 날

2014

4

甲午年

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b>1</b> 어룡인의 날 壬寅 <b>만우절</b>	<b>2</b> ☞ 3.3 癸卯 <b>과학탐구 포럼 대회</b>	<b>3</b> ☞ 3.4 甲辰 <b>전학검사</b>	<b>4</b> 향도예비군의 날 乙巳	<b>5</b> 식목일 - 칠명 丙午
<b>6</b> ☞ 한식 丁未	<b>7</b> 보건의 날 · 신문의 날	<b>8</b> ☞ 3.9 己酉 <b>고내로봇대회</b>	<b>9</b> ☞ 3.10 庚戌 <b>과학탐구 대회</b>	<b>10</b> ☞ 3.11 辛亥	<b>11</b> ☞ 3.12 壬子 <b>동아리</b>	<b>12</b> ☞ 3.13 癸丑
<b>13</b>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b>14</b> ☞ 3.15 乙卯	<b>15</b> ☞ 3.16 丙辰	<b>16</b> ☞ 3.17 丁巳	<b>17</b> ☞ 3.18 戊午	<b>18</b> ☞ 3.19 己未	<b>19</b> 4·19혁명기념일 庚申
		← ☞ 수 하	☞ 여행	→ ☞		
<b>20</b> 장제인의 날 · 곡우 辛酉	<b>21</b> ☞ 과학의 날 壬戌	<b>22</b> ☞ 3.23 癸亥 <b>학사학사</b>	<b>23</b> ☞ 3.24 甲子	<b>24</b> ☞ 3.25 乙丑	<b>25</b> ☞ 법의 날 丙寅 <b>동아리</b>	<b>26</b> ☞ 3.27 丁卯
<b>27</b> ☞ 3.28 戊辰	<b>28</b> 충무공이순신탄신일	<b>29</b> ☞ 4.1 庚午	<b>30</b> ☞ 4.2 辛未			
	<b>학생회장선거소변검사.</b>					

<b>비 사</b> ○기계오내기를 드물게 및 설치 ○기계오 내거의 설치 및 관리 ○봄, 여름 등 갖가지 병해충 방제 ○직이재해는 병이 피중 및 체계적인 징조방제 ○급산질비료 및 비구비 시정	<b>발 사</b> ○논보리 순매 방지 및 재충포 관리 = 배수 불량지역 물병도양 강개 차기 ○옥수수 및 콩, 감, 콩매 파종 ○고구마 온실관리 ○고령지 강자 파종	<b>경 사</b> ○조수제배를 계속 요원하기 및 어주상기 ○마늘 웃거름 주기 및 수분관리 ○사과 - 배 개화기 꽃사의 피해 예방 ○사과 - 배 수종별 병사 및 안검수분 실시 ○노타리바섯 재배관리 및 표고버섯 출근검종	<b>축 사</b> ○가족 질병 예방 및 소독 철저 ○새끼돼지 민할 및 실사병 예방 ○젓배기용 옥수수 씨뿌리기 ○달걀 뉴캐슬병 예방검종 실시 ○모스 살피우기 및 새끼돼지 보조사육 관리
--	--	--	---

# 안산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성곡로 (예술광장로 75 (영동동)) <http://www.ansannonghyup.com>

- 본 지점 : 405-8511
- 부곡지점 : 416-6300
- 수암지점 : 487-8611
- 안성지점 : 317-4592
- 고잔지점 : 402-3580
- 중앙지점 : 438-6000
- 옥길지점 : 405-8616
- 능곡지점 : 435-0500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조항

### 1조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돈과 권력만을 쫓는 사회의 최후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참사가 발생한 이후, 참사를 정쟁의 화두로 삼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죠.

각자도생을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개인의 생명이나 존엄성을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만약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명이나 존엄성이 차등된다면 국가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국가에 역할을 기대하기보단 민간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을 하나라도 더 들어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모든 인간 활동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교환할 수 없으며, 누구도 생명을 다른 목적과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임의로 박탈해서도 박탈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일차적



주체는 국가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서 국가에 의해 생명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와 함께 국가에게 제 3자의 침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생명권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사형제도나 배아 복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지요. 그러나 이것만이 생명권 침해는 아닙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국가 폭력이나 국가의 인권 보호 책임 부재가 빚어낸 재난 참사, 혹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게 된 경우 역시 생명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생명권 침해는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사회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치·사회·경제 체제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지 않을 때 ‘모든 인간은 존엄함에 있어 평등하다’라는 인권의 대전제는 흔들릴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돈이나 권력이 생명에 우선시 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언제든지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요. 반대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럴 때에야 이윤의 추구나 권력의 횡포에 의해 안전을 위협 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 2조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자유와 평등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치이지만 한편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아요. 예컨대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만 선택할 수 있는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감내하며 살 것을 강요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과거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상대방의 나이를 묻곤 했는데 그러한 행위는 나이로 위계를 정하려는 사회적 관습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로 사람의 위계를 정하는 것은 제가 실생활에서는 알게 모르게 행하는 차별과 억압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자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데 이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테지요. 하지만 아무리 이런 인식이 보편화된 사회라고 해도 모든 인간이 실제로 평등하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각의 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그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이나 경제적 자원의 결핍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평등이 성취되었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의 실질적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타인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타인을 수단 삼아 누리는 자유는 기실 자유가 아니라 특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권은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이자 지배 체제

의 억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 사태 이후 노동자 28명이 자살 혹은 스트레스성 질병 등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 노동자의 죽음은 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삶의 선택지가 고갈되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었기 때문이지요. 본인이 원하는 노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노동으로 개인의 잠재 능력을 계발해나가며, 이를 통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죽음을 택한 노동자의 자살이 자유로운 인간 활동의 행위라기보다는 사회적 타살로 여겨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자유의 보장이라면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생기는 생존권의 위협이나 인권 침해는 결국 모든 사람의 존엄함이 평등하다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서 기인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문의 해설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한국의 대형 참사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목숨을 잃은 대다수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들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동료 시민 혹은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받지 못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죽어간 기간제 교사의 죽음은 또 어떠한가요? 동료인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순직 처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분을 우선으로 하는 계산법으로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그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은 국적, 신분, 지위, 나이, 성별 등을 막론하고 모든 구제와 사후 조치에서 평등한 존중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보다 인간적인 삶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 안에서 평등한 관계 맺기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을 동등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의 존엄이 평등하게 보장되면 사회는 보다 안전해지겠지요. 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혹은 누군가의 자유가 다른 누군가의 억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3조 (연대와 협력)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밀양 송전탑 저지 투쟁,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투쟁, 최근 영덕에서 진행된 원자력 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 투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투쟁이 가능했던 것은 사람들이 연대를 했기 때문이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단 순히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 해준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연대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을 '외부세력'이라 칭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죠. 그들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타인이 겪는 어려운 일에 관심을 가지 않고 흠어진 모래알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말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인권이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겪을 일이 없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인도가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제도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권력이나 자본이 만들어 내는 무수히 많은 문제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배적인 체제가 거대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로 그렇

기 때문에 혼자서는 나의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사회적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엄과 타인의 존엄의 무게가 조금도 다르지 않고 타인의 존엄이 위협받을 때 나의 존엄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감각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감각과 공감의 바탕 위에 사회적 결속은 끈끈해지고 지배적인 사회경제 체제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에 맞서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가 바로 연대입니다.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며,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에야, 즉 연대할 때에야 우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연대는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권리는 폄하 당해서도 침해 당해서도 안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피해 당사자와 함께 하려고 할 때마다 ‘외부 세력’ 운운하면서 연대의 가치를 폄하하고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은, 사회 변화를 원치 않는 세력이 연대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4조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안전한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안전은 종종 사람들을 억압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간첩조작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죠. 이런 일은 국가가 안전을 내세워 일어나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향하는 안전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안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몇 해 전 화성에서 불산이 누출된 적이 있어요. 사고 지역 인근에 살고 있었던 친구는 그렇게 위험한 시설물이 집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아연실색했죠. 사고에 책임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나 지자체 그 어느 누구도 주민들에게 위험물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2015년 2월) 대법원은 KTX 해고 승무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이들 승무원들을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의 근거는 열차 내 핵심 업무인 안전 업무에 대해 승무원들이 권한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실제 화재 진압이나 승객대피 등 승객을 안전을 위해 승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요.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안전 업무와 승객 응대 업무를 분리시켰어요. 300km로 달리는 KTX 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려는 공기업의 이윤 추구에 위협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하고, 이것은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헌법 제34조 6항에서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즉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은 시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안전’이 시민의 권리라는 의미는 그가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적든 아니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든 동일하게 안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안전’이란, 우리가 안전장구를 다 갖추고 주의를 해야 간신히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설사 실수로 안전장구를 갖추지 못했고 주의를 하지 못했을 때에도 안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의무입니다. 기업은 자칫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제도와 통제를 통해서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와 역할이기도 합니다.

보수단체들은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는데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나도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는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정부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의 상품화’입니다.



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마련한 안전대책 중에서 속도를 내면서 실행되는 것은 민간 손해보험 활성화 등 '안전산업 발전 대책'이었습니다. 안전을 산업으로 만들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며, 돈이 있는 사람들만 안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전이 비용으로 거래되도록 만들어서 는 안 됩니다.



© 권병준

정부는 '안전'을 강조하며 CCTV를 달자고 하고, '안전'을 위해서 통제에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도에는 '시민들은 무지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통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시민들을 자유롭게 통제합니다. 정보가 없는 시민들은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지요.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통제에 따르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하고 자신들만 빠

저나온 선원들을 보세요. 그들은 끝까지 위험을 방치하고 자신들만 빠져나갔습니다. 기업의 이윤 때문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에 서도 회장은 균열이 확장되는 순간까지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자신만 탈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에 따르는 것’ 으로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하는 정부와 기업에 맞서 제대로 된 위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시민과 노동자들이 전문가들과 만나 스스로를 교육하고, 기업과 정부의 불안정한 관리 감독을 통제하여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때 안전은 가능해집니다. 위험을 줄이고 피하려면, 반드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참여와 통제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참여와 통제는 제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인천지역에서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가 통과된 바 있지요. 여기서는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시민안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험지도’를 만들고, 위험을 양산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며, 위험요소를 고치도록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현실로부터 변화를 만들어갈 때 ‘안전한 사회’가 가능합니다.

## 5조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은 평등하기에 구조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객기나 여객선 구조 매뉴얼 상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라기보다는 구조에 취약한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배가 침몰했다는 사실보다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국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제3조 제3호에서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즉 재난과 참사의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정부의 기본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늘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어떤 경우는 참사가 되지만 어떤 경우는 경미한 사고가 되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지만 정부와 책임 있는 주체들이 사고 이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한다면 그 사고의 피해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이 정부는 재난 상황에 처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의 주요 간부들은 책임을 서로 미뤘고 제대로 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요. 심지어 도움을 주러 온 이들을 돌려보내는 등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도 않았고요. 참사 지역으로 달려가야 할 헬기는 의전용으로 사용되었고 참사 현장에 달려간 123정장은 청와대 보고 압박에 시달려서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 비동사

정부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가만히’ 기다렸던 승객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구조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수색을

종료하려고만 했지요. 잠수사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미수습자 가족들을 겁박하여 결국 미수습자들이 수색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수습자 인양을 위한 세월호 인양도 계속 늦추다가 1주기가 되어서 폭발적인 인양 요구에 놀라 급작스럽게 인양을 발표했습니다. 시신이나 유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뺏조각이라도 만지고 싶어 하는 미수습자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세월호는 참사입니다.

구조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는 결코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구조하기 어렵거나 정보가 없는 이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호를 자주 이용했던 화물기사들은 이상을 먼저 감지하고 스스로 살아남았고 학생들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선체에 진입하여 구조하지 않고 스스로 뛰어내린 이들만을 건져올렸습니다. 이들이 구한 사람들은 선박직 직원들이었습니다. 배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선박직 직원들은 가장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곳으로 나와 해경의 도움을 받아 구조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무능한 해경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평소에 구조를 위한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서류로만 훈련 상황을 대체하기도 했지요. 구조장비도 없었습니다. 123정장이 세월호 근처까지 갔으나 이 배는 구조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구조장비를 실은 배와 헬기는 너무나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관료적이고 무책임한 이들이 중앙재난대책 본부와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지시를 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었죠. 그러므로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감추기 위해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조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구조에 힘쓸 수 있도록 하려면 구조 실패의 원인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참사에서 긴장감을 갖고 이후 구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구조 예산도 제대로 배정하고 훈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하고 현장 지휘관에게 힘이 부여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이 기용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높아져야 이후 재난과 사고에서도 최선을 다한 구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6조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지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재난에 관한 진실을 알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죠. 더욱이 정보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그 정보를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평등한 정보 접근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죠.

종종 딸에게 '넌 말해도 몰라' 혹은 '넌 몰라도 돼'라고 말해왔어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아이의 알 권리를 무시해 온 것은 아니었나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05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불처벌 투쟁원칙>에 의하면 '국민의 진실에 대한 불가양의 권리'가 제2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끔찍한 범죄의 발생에 대하여, 대량의 또는 체계적인 침해를 통해 그러한 범죄의 발생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과 이유에 관해 진실에 대한 불가양의 알 권리를 가진다. 진실에 대한 권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행사는 권리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안전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진실이 은폐되면 왜곡된 현실이 지속되고 참사는 반복됩니다. 그

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검찰의 수사결과 보고서가 발표되고, 재판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구조 실패의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세월호는 불법 개조 및 과적,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었고 조타 미숙으로 인한 급변침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구조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검찰은 123경장의 무책임이 원인이라고 했으나, 법원에서는 123경장만이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진실을 알 수 없다면, 변화도 없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법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와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라는 형태의 독립적인 공적 기관에 조사와 처리의 기능을 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감사원도, 검찰도, 법원도, 국회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은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 참사는 정부의 무능과 비리가 결부되어 있어서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구가 충분한 권한을 갖도록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죠. 그러나 정부와 여당





의 강한 반대로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조사권만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특조위의 한계는 노정되어 있었던 셈이지요. 정부는 특조위의 시기를 1년으로 못 박고 예산도 깎았습니다. 특조위의 조사 인원도 축소했구요. 결국 조사도 충분히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특조위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의 주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 위원들이나 상임 위원들을 비난하고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해수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가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의결하자,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이 문서에 따라 조사를 방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 해수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은 보수단체를 추동해서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 위원장, 상임위원을 고발하게 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은 독립성과 공정성, 충분한 권한을 가진 조사기구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사를 만들어낸 기득권의 카르텔은 사법부를 독점하거나 언론을 독점하고, 행정부를 통해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의 조사는 반드시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없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기구를 스스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번 특조위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권한이 축소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시민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힘으로 특별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조위의 시한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이런 기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 7조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의 해결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건에 이음을 붙이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의 경우 사건에 붙여진 이음만으로는 삼성이 그 재난에 책임 있는 주체라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언론 플레이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싹 지운 것이지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칭하는 것 역시 기업이나 정부가 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참사 현장의 관리자만이 책임자가 아닙니다. 참사의 계기를 가져온 위험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러한 환경을 묵인한 사업자 및 정부 관료들에게 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자 정부는 '보상금'을 들먹이며 유족들을 우롱했습니다. 청와대가 시행령을 통해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할 때 유족들이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요구하자, 유가족들에게 수억 원씩 지급될 것이라고 하면서 왜곡된 선전을 했지요.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 정도 받았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일부 시민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배상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기업과 정부는 자신들

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보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제대로 된 해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의 해결이란 피해자 가족들이 ‘돈을 받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참사의 정의로운 해결이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야 희생자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의미있는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서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가에게는 조사할 의무가 있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할 의무가 있으며, 유죄로 확정된 때에는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국가의 의무인 것입니다.

정의로운 해결의 첫 번째인 책임자 처벌은 모든 참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은 국가 안보실이나 해수부, 해경청장, 서해 청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당일 현장에 갔으나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었던 123경장만 책임을 지고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청해진해운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른 이들은 대다수 집행 유예나 무죄로 석방되었고, 심지어 정부가

만든 기관에 특별채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의 실질 책임자도 징역 7년에 머물렀지요. 선장만이 무기징역형으로 강한 처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잘못된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영전했듯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과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에서 실질적인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고 하위직들만 처벌되는 것에 문제 제기하고, 법인과 실질적인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리와 연관된 공무원들도 함께 처벌하도록 만드는 법이지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에서 다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하며, 대중행동을 통해 이를 수용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전장치를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마련된 대책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변질되었고, 대구지하철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1인 승무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해경 해체’라는 강수를 두면서 만들어진 ‘국민안전처’는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었던듯이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안전규제는 점차로 완화되고 있고, 안전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분 아래 언딘과 같은 민간업체들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노동자와 시민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기업과 정부를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8조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피해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합의의 중심에 피해자들은 빠져있어요. 오히려 이들의 아픔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사람들에게 '피해자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정관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순수'하지 못한 피해자로 여기며 비난하고요. 우리도 세월호 유가족에게도 특정한 피해자의 모습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피해자들이 배상을 이야기하면 '순수'하지 못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배상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상은 진실 정의 재발방지 등을 포괄하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대 국가적인 요구여야 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세월호 참사 후, 많은 시민들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이들도 나타났지요. 물론 일베류의 개인적인 일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악마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적도 없는

‘보상금’을 들먹이며 피해자를 모욕했고, 그들이 ‘대통령을 조사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정치투쟁’을 한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데에는 언론 역시 한몫했지요. 피해자들은 이런 언론과 정부의 태도로 인해 줄지에 ‘돈을 밝히는 이들’ 혹은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려서 행동하는 이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낙인찍기와 평가르기는 우리 사회의 병폐와 참사를 만들었던 자들의 고의적인 행동이었으며, 곧이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종북’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단식농성장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는 등 조직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통감하는 이들도 더 큰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존중받을 피해자의 권리는 지켜지지 못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존중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피해는 운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현한 것이며, 따라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거나 침묵해왔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고통마저도 ‘돈’으로 치환하는 놀라운 가치의 전도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된 것 아니냐’는 말속에는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오로지 돈만 있으면 된다는 물질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 속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배상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상은 치유의 출발이자 그 참사에 대한 사회적인 사죄의 출발입니다.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 보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교통사고의 사망사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불법행위자이고 가해자의 일원인 정부가 주도하는 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배상에는 ‘충분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배상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책임 있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는 ‘사과를 하라’는 요구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책임이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분명해질 때 가능해집니다. 참사의 주범들이 갑자기 개과천선하여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과를 할 리 없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을 때, 그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치유되려면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피해자들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들이 추천한 위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력구제’를 한다는 등 피해자들을 비판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2001년 제정된 <유럽 연합의 기본 결정>에서도 피해자의 기본권을 규정합니다. 이 기본권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가 존중과 인정을 받고,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지원을 받는 등의 권리를 명시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해 알고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요. 세월호는 참사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참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때문에 증거인멸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416가족협의회’를 만들어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16 특별법에서는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위원이 3명의 특별위원으로 선임되고 피해자들에게 조사 신청권이 부여되는 선에서 그렸지만, 이후 특별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전달받고 필요한 과정에 직접 참관,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9조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육체적인 상처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지만 심리적 상처에 대한 지속적인 치유 역시 중요해요. 심리적 상처는 육체적 상처에 비해 드러나지 않고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피해자는 오랫동안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해요. 피해자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가는 책임지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생계 지원을 요청한 참사 생존자에게 한 공무원은 '살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해요. 단원과 생존 학생들도 유사한 모욕을 받아야 했고요. 이들 생존자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이며, 이들은 참사의 아픔과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들이 피해자의 온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 가슴이 아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피해자는 존엄 회복의 주체입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 대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생애 주기에 따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에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구조와 지원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및 유관한 범위에 노출된 사람들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해 범주도 생명과 신체, 정신적 및 재산상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구조활동, 피해자 지원 과정, 언론 보도 및 건강하지 않은 사회적 소통 방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2차적 피해를 포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서는 피해자의 범위와 피해의 의미가 지나치게 좁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희생자와 생존자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생계활동을 하지 못했던 진도 어민, 그리고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러 갔던 민간인 잠수사, 자원활동가들, 세월호 희생자들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들, 그리고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지만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이들, 희생자들의 친구 등 무수히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는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배 보상 특별법에서 피해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힘으로써 당연히 피해자로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해야 할 많은 사람들을 그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중앙사고 수습대책 본부는 처음부터 우왕좌왕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달려간 가족들은 제대로 된 소식을 알지 못해 애를 태워야 했고, 머물 곳도 마련되지 않아서 팽목항에서 오랜 시간 발만 굴러야 했습니다. 시신은 제대로 수습 되지 않았고, 신원확인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했으며, 운구차나 장례식장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적절한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구제와 지원은 매우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다르게 순직 인정이 되지 못했죠. 또한 진도 어민들 중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한 이들이 배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지원의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잠수사 중 한 명은 다른 잠수사 한 명의 사망에 책임을 지고 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말한 필요도 없고요. 이런 지원을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모하고 기억할 권리는 또 다른 재난을 막고,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경찰들이 그것을 빌미로 하여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막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모문화제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 하달되기도 했지요. 세월호 이야기를 다룬 연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단원고 교실을 존치하여 제대로 된 교육의 가능성을 만들자는 시도도 ‘아이들에게 학교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 한마디로 무시됩니다. 기억을 덮는 것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미래의 변화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추모사업은 정치적 고려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계획되고 집행되

어야 하며, 지역사회 치유와 미래세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운영 과정에 참여하고 갈등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 받아야 합니다. 세월호 선체와 교실, 유품 등 진상 규명 및 추모와 기억에 관련된 모든 것은 신중히 보관되어야 하고요.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은 진상 규명이 끝난 후에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설명과 사과가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재난 참사 지원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 지원 범위는 치유를 위한 공동체 지원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보 접근에 있어 권리 침해 없이 친절한 정보 제공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는 간소하고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요. 정부는 국가와 사회가 기억해야 할 내용과 방식에 대한 연구와 조사 사업을 진행해야 하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유무형의 추모사업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추모사업은 추모(기억), 안전, 치유, 교육 내용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10조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애도란 막연히 마음을 적시다 빠져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안라잡고 마는, 그저 '어떤 사람들'의 불행한 삶이라고 여기는 건 참된 애도가 아니잖아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피해 당사자여야 하지 않아요? 억지로 애도를 중단하려고 할수록 슬픔과 분노는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노란 리본을 달거나 세월호 참사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할 때 "이제 그만하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정부가 나서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세월호 참사는 집단적인 상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실의 고통은 진실 규명과 같은 애도의 의식뿐만 아니라 충분히 울고, 함께 슬퍼하며, 그 고통을 표현하는 애도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극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그것은 결국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런 시간을 일반시민은 물론 유가족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면서 서둘러 잊으라 하고 서둘러 극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애도가 마치 사회적 분열을 조

장하고 경제적 손실을 끼치며 정치적 음모론을 유포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요. 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선제 인양 등을 요구하느라 유가족은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는 유가족의 한탄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도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일어난 참사의 사후 처리를 정당하게 진행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재난 참사의 과정과 결과를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와 힘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유가족을 비롯해 그 상실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무책임한 언론에서 이런 애도의 과정을 서둘러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테지요. 애도할 권리에 대한 요구는 정의 구현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애도의 과정으로부터 공감과 행동의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단지 의식주를 얻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서로 공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며 삼니





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타인에 공감하는 것은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공감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서로 돕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화해하거나 하며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생산하고, 나누고, 혹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해나갑니다. 공감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원천이지요. 그런데 만일 그러한 공감의 표현이 강제로 억제된다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이유로 슬픔과 그리움에 대한 표현이 억압된다면,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존엄에 대한 침해이자 훼손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을 통해 가족과 친구, 이웃, 소중한 생명을 갑자기 잃어 상실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슬픔을 공감하는 것은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그것은 자연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공감이 없다면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모이고, 때로는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에 아파하는 자에게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만 던지는 것은 공감이 아니겠지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려고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거나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정성껏 나눌 수 있을 때, 즉 행동이 함께 할 때 바로 공감은 생명력을 가질 것입니다.

## 11조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성 소수자 단체에서 일하고 동성애자로 살면서 많은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공동체가 쓰러진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이 운동의 원동력이 되죠.

단원과 교실을 존치하는 것은 피해자와 참사를 기억하는 첫걸음이지요. 유가족이나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교실 존치를 요구하고 나서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 문제가 유가족과 재학생 가족의 갈등으로 치달을 때까지 수수방관한 책임자들에게 분노해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군이 잘못된 일이 있다면 정부는 사과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해요.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고 그 중심에는 피해자가 있어야 하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인간의 정체성은 기억을 통해 규정됩니다. 어제의 나에 대한 기억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지요. 경험이 쌓인 추억이나 학습을 통해 축적한 지식 등, 이 모든 것들은 기억이며 이 기억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윤리적 관습, 일상 양식,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 생존방식을 제공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에 대한 사회의 공적이고 집단적인 기억이 오늘의 사회를 구성합니다. 역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배우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그렇게 시끄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이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

에 세월호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넘겨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세월호를 참사를 역사에서 빠르게 지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막고 세월호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은 그 과거가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의미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재난과 그 재난의 피해자를 공동체가 기억한다는 것은 재난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한 재난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깨달음, 서로를 존중하는 생존방식에 대한 성찰, 일상의 변화와 비슷한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이런 총체적인 사회 변화는 기억으로부터 시작되고, 기억을 통해 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피해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리움을 간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추모비를 세우거나 추모일을 지키는 것이 기억의 모든 형식인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피해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낳은 재난의 원인, 전개 과정, 결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해자를 가장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며, 정확한 기억은 현재의 우리에게 정확한 삶의 지침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제대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은 가능한 세밀하고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건이란 개인 혹은 공동체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고, 따라서 다르게 기억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은 언제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과 기억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은 깊은 갈등을 불러올 수 있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록과 기억은 일종의 투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공동체는 서로 다른 해석이 불러오는 갈등을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해석들을 민주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해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 기준은 언제나 피해자여야 할 것이며, 이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재난을 기록하려는 목적을 언제나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과 기억을 구성하는 모든 자료들이 사회적으로 투명하고 평등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12조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

세월호 참사 초기 방송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유가족들이 그때 KBS 앞으로 와서 사장한테 항의하던 게 기억나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보내지 않고 왜곡하고 비방하는 보도가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죠.

우리나라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정부가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고 벌인 만행이 적지 않아요. 정부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일하다가 사람이 다쳤는데 구급차를 안 부르고 직장 부리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하다가 큰 사고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를 보다 보면 노동조합이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서로 지키고 싸우지 않으면 목숨도 건강도 위험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부, 기업, 언론은 그 출현이 초자연적이거나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인간 스스로가 창조해낸 공공물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보호가 제1의무이며, 기업은 사람들의 생존은 물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나아가 언론은 정부와 기업이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공유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위해 일부를 편파적으로 보호하고 다른 일부의 권리를 억압한다면, 그리고 기업이 특정 집단이 풍요와 행복을 독점하는 불평등한 장치로 전략한다면, 나아가 언론이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은폐하고 사람들에게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한다면, 이는 반드시 그리고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기구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언론은 정부와 달리 사적인 이익, 그리고 고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이익과 자유가 사회의 불균형과 적대감을 양산하고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면, 사람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존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과 언론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정부, 기업, 언론은 인간의 삶 이전부터 초월적으로 존재한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존재 이유 역시 인간의 생명, 존엄성, 안전 유지에 있으며, 이 필요에 따라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협의해 만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권력 행사가 과도하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사람들은 서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위적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자 곧 주권자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 정복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연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권의 실천을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이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컨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고 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과연 용인될 수 있을까요?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악의적으로 ‘빨갱이’나 ‘종북’, ‘사회 혼란’ 등의 낙인을 찍어 온 역사를 기억해 볼까요? 이런 말들은 진위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를 긴장과 공포로 몰아넣어 왔고, 억울한 희생자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처럼 상대와 공존을 고려하지 않는 나의 안위는,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존엄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자기 보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공존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13조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세상이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인간다운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타임머신 타고 돌아볼 수 없게 되고요 스스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뭐지?'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와요. 저항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 같아요.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 이 조항은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도 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힘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거나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것은 사회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생명의 존엄이 존중받고 평등하게 지켜지는 사회일 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존엄에 기초한 사회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과정이기도 해야 합니다. 즉, 인간의 존엄이란 바로 지금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자 삶의 양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 성장 후 분배'의 철학을 기



억해 볼까요? 한국 사회는 가열찬 근대화의 과정에서 먼저 성장을 이루면 정의로운 분배가 따라올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자본가의 권리가 노동자의 권리에 앞섰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장의 낙수 효과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만 더욱 견고해졌지요. 따라서 공정한 분배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방법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존엄한 사회의 건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성장,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안정화 등이 이루어지면 존엄이라는 궁극의 가치가 실현될 것처럼 이야기되어서는 안됩니다. 존엄한 사회로 가는 길에는 우회로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서로의 존엄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존엄에 기초한 사회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배제, 억압, 착취, 거짓, 부조리, 차별 등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공존의 원칙을 어기고 인간의 생명, 안전, 존엄을 훼손하는 어떤 악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과 권력은 존엄에 기반한 사회라는 목적과 현실을 위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이 수단이 목적인 존엄성을 훼손한다면 이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단일 것입니다. 나아가 돈과 권력이라는 수단이 오히려 목적으로 와전되어 존엄성이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 밀려나거나 일부 기득권의 특권이 된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의 존엄이 몰락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돈과 권력의 노예로 전락하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라는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동시에 자유롭고 평등한 연대와 협력을 지금/여기에서 자신의 생활양식으로 체득하면서 스스로의, 그리고 모두의 존엄성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가장 존엄한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권리의 실현입니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후문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그렇게 참담하게 가라앉은 이후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단지 세월호를 운항한 기업의 일탈이나 승무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안일한 구조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체계적 부조리와 불의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416운동은 단지 세월호 사건 만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참사를 반복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의와 반인권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인간의 존엄성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16인권선언은 바로 그 운동이 담고 있는 정신을 인권의 언어로 표현한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문은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인권선언문들과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으로 불리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나 이차 대전 이후 다시는 그러한 끔찍한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작성된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유명한 인권선언문들은 대부분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선언의 배경과 근본적 가치 지향을 담고 있고 본문은 그에 입각한 기본적인 권리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4.16인권선언문은 그러한 익숙한 인권선언문의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부분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그 문제를 우리가 안전과 존엄,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두 번째 부분은 이를 위해 우리가 쟁취해야 할 권리항목들을, 세 번째 부분은 이 선언이 천명하는 권리를 쟁취하고 존엄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4.16인권선언문의 형식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의 핵심은 4.16인권선언은 선언문에 적힌 문장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에 참여하는 이들의 행동에 의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확인입니다. 또한 선언에 참여하는 이들이 그러한 행동을 결의하고 포기하지 않고

존엄과 안전이 담보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하는 말이지요.

4.16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리고 하나의 참사로서 세월호를 넘어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  
어났던 무수한 세월호 참사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그러한 참  
사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뜻(意)을 묶어내는(結) 주체들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진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를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사회를 함께 구축하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 갈 것임을 결의하는  
말입니다.

올봄이면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  
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이 한파  
를 견디며 농성을 하고, 불별더위를 뚫고 거리를 걸으며, 곡기를  
끓고 진실을 요구하고, 물대포에 쓰러지며 정의를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존엄과 안전의 요구를 봉쇄하는 차벽이었고,  
인권의 주장을 거부하는 진압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  
사에 대한 언론의 왜곡과 우익 대중의 모욕이었지요.

아마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빠른 시일 내에 밝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이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을 쇠신하는 일은 더더욱 많은 시간을 필요  
로 할 테고요. 그리고 소요될 시간만큼이나 세월호는 대중들의

기억에서 흐릿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세월호라는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월호가 단지 비극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세월호가 요구하는 진실과 세월호가 호소하는 정의에 응답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4.16인권선언은 바로 그 진실의 요구와 정의의 호소에 응답하고자 하는 이들,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이들, 416 운동의 주체들의 약속입니다. 함께 응답하고 같이 책임지는 더 많은 주체들의 약속이 <준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단지 문장들의 집합이 아니라 실천의 힘으로 완성시켜 갈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 4.16인권선언 더:하기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 4.16인권선언 더:하기 +

이 책은 4.16인권선언에 풍부하고 친근한 언어의 옷을 입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선언 행간의 물음에 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은 더 이상 평등하게 존엄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행동과 변화에 대한 의지이자, 실천의 약속입니다. 선언이 선언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읽고 주변과 나누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더불어 여러분의 동참을 간절히 기다리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동참이 존엄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행동의 시작입니다.

**더:하기 #1**  
**‘선언인’으로 함께하기**



아직 선언인이 아니신가요?

일상을 바꾸는 실천약속 한 가지를 다짐하며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함께 행동하는 ‘선언인 운동’을 제안 드립니다.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2주기에 열리는 <1만 선언인 대회>까지 1만 선언인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행동합니다.

**\*선언을 행동으로 실현할 ‘선언인’ 등록하기**

<http://416act.net/notice/9721>

**더:하기 #2**  
**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4.16인권선언을 담은 양면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사진 이미지와 함께 선언문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그 동안 세월호 운동 현장을 함께 한 여러 사진작가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세월호를 알리는 행동! 포스터를 붙여주세요.**

**\*자세한 안내\_ [http://416act.net/decl\\_notice/10728](http://416act.net/decl_notice/10728)**

**\*포스터 배송신청\_ <http://goo.gl/forms/R8takYbM88>**

### 더:하기+ #3

#### 〈#노란리본셀카 #416인권선언 SNS 릴레이 캠페인〉

‘선언인’임을 알리는 SNS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노란리본셀카를 찍고 본인이 이용하는 SNS에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자세한 안내** [http://416act.net/decl\\_notice/10728](http://416act.net/decl_notice/10728)  
[www.facebook.com/416declaration](http://www.facebook.com/416declaration)

### 더:하기+ #4



#### 만인낭독 프로젝트 〈소리내, 4.16인권선언〉

4.16인권선언이 세상에 ‘소리내’ 기를 바라며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선언문을 함께 읽는 프로젝트입니다. 선언을 ‘소리내’ 어 함께 읽어주시고 읽는 모습을 촬영하여, 개인 SNS나 유튜브에 촬영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촬영된 영상을 모아 만인이 함께 읽는 편집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 [http://416act.net/decl\\_notice/11550](http://416act.net/decl_notice/11550)  
[www.facebook.com/416declaration/](http://www.facebook.com/416declaration/)

## 더:하기+ #5

### 더 찾아보기




세월호 침몰 이후 세월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4.16 인권선언의 네 가지 열쇳말인 존엄, 안전, 인권, 선언에 관한 글을 읽어볼 수 있는 소책자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말하다>를 소개합니다.

**\*소책자** [http://416act.net/decl\\_archive/11324](http://416act.net/decl_archive/11324)

세월호 침몰 이후 4.16인권선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4.16인권선언 추진 타임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이곳에서 4.16인권선언의 기초가 되었던 풀뿌리 토론의 현장의 기록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http://www.taogi.net/416declaration/step>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참사를 기억해야 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부디 그 행동의 불씨를 여러분이 지펴주세요! 

---

퍼낸날 | 2016년 2월 11일

기획 · 편집 |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디자인 | 조용신

퍼낸곳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후원 | 인권재단 사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연락처 | 02-2285-0416

홈페이지 | [416act.net/416declaration](http://416act.net/416declaration)

페이스북 | [facebook.com/416declaration](https://facebook.com/416declaration)

이메일 | [416declaration@gmail.com](mailto:416declaration@gmail.com)

---

이 책자는 ○▽△음 인권재단사람 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작에 도움주신 인권재단 사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